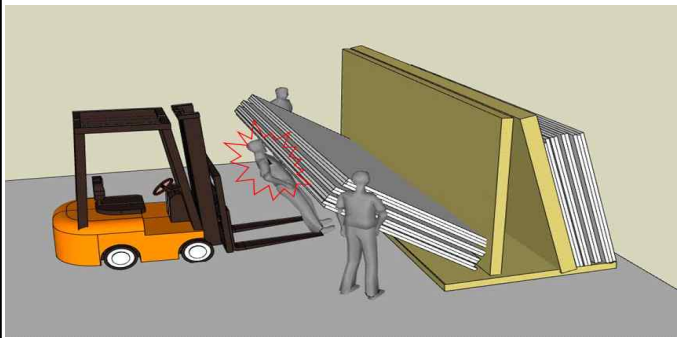


출고작업 중 넘어진 세라믹타일에 깔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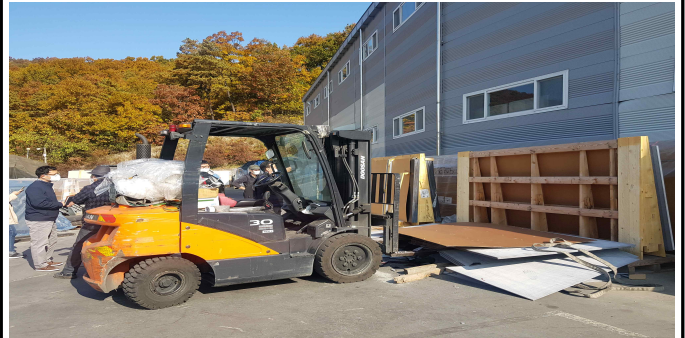
재해개요

2020.10.29.(목) 15:38분경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 (주)△△△ 물류창고에서 재해자 ○○○이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세라믹 타일을 출고하는 작업 중 타일 1묶음(10장, 1.5ton)이 작업자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타일에 깔려 사망한 사고임

재해관련사진



사고발생상황 (추정)



사고 현장 전경

재해발생원인

-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중량물 적재장소(야적장) 부적정
 - 사고발생 A형 적재대의 각도 측정 결과, 88~89°로 되어 있었으며 현장바닥이 2°로 기울어짐을 고려할 때, 재해자를 덮친 세라믹타일 묶음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태로 적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
- 중량물 취급작업 시 관리적 조치 미흡
 -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미 실시
 - 중량물의 낙하 또는 전도로 인한 작업자 협착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재장소 및 적재순서, 운반·인양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미 작성
-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
 - 중량물 취급 작업 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지만,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

재해예방대책

- A형 적재대를 활용하는 중량물은 경사진 장소 적재 금지
 - A형 적재대는 실내 또는 건물 주변 평평한 야적장을 지정·설치하여 적재하고, 경사진 야적장에는 적재를 금지해야 함.
-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
 -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함
 - 적재장소 및 적재순서, 운반·인양방법 및 사용장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
- 중량물 취급 작업 관련 작업지휘자 배치
 - 중량물 취급 작업 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
- 세라믹타일 적재각도 측정·기록 및 교차확인 체계 구축